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11 월 13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화번호: 723-5052 (담당: 이지은 간사 010-9395-0958)

소 개 의 원 : 김현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성명 : 이석태
건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2년 11월 13일
<p>소개의견</p> <p>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여러 감세조치를 단행했지만, 감세효과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매우 뒤쳐진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진행 및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도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p> <p>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단행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시키고, 담세력에 맞는 세율을 제대로 부과하여 조세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은 물론 국가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 복지재원 조달에 기여하고자 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소개합니다.</p> <p>이에 더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소득 간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줄인다는 점에서 합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공평성을 저해해 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비현실적인 기준 금액인 4천만원을 현실에 맞게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동시에 소개합니다.</p>	

소 개 의 원

김현미

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2. 11. 13.

제안자 :

1. 제안이유

재정수요의 충족과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세 부담 능력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

또한 과세공평성을 꾀하고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며, 주식거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함. 단 소액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주식시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조세정의 및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 이하 3단계 구간은 그대로 두되, 상위 2구간인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3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8,8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구간, 1억 2,000만원 초과 금액 구간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수정하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수정하고자 함.

현행 4천만원이던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함으로써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함. 양도가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년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3000만원으로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제5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의한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 8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1천 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 2천만원 초과	2천 710만원 +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4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년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도 공제한다.

제103조항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연 3000만원.

제104조의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나. 그 외 주식 등

제55조제1항에 의한 세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호 내지 5호 생략</p> <p>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u>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u>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p> <p>7호 내지 10호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호 내지 5호 생략</p> <p>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u>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u>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p> <p>7호 내지 10호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 표준	<u>서울</u>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24)
8천 8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1천 590만원 + (8천 8 00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35)
1억 2천만원 초과	2천 710만원 + (1억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42)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
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
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
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신주
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 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생략)

② (생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95條(讓渡所得金額) ①-----

----- . 다만,

제94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양

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신설>

第103條(讓渡所得基本控除) ①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所得별로 당해연도의 讓渡所得金額에서 각각 年 250萬원을 공제한다.

1. 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② · ③ (생략)

第104條(讓渡所得稅의 稅率)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

제한 뒤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년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도 공제한다.

第103條(讓渡所得基本控除) ①--

--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

-----.

2. -----3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연 3000만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04條(讓渡所得稅의 稅率) ①-

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

1. ~ 10 (현행과 같음)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나. 그 밖의 주식 등

제55조제1항에 의한 세율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24)
8천 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 590만원 + (8천 8 00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 10만원 + (3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 00분의 38)

② (생략)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석태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번지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김현미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